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297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이준형, 유 용, 김경우,
김정태, 김제리, 이호대,
이현찬, 권영희, 이광호,
채인목 의원(10명)

1. 제안이유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의 확대와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와 교육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대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자전거 안전교육의 실시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 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을“(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을 “시장은”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를 “자전거 이용과 관련”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을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자전거교통안전”을 “자전거 교통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으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p> <p>3.·4. (생략)</p> <p><신설></p> <p><신설></p> | <p>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 ----- ----- <u>자전거 이용과 관련</u> ----- <u>실시하여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등 -----</p> <p>3.·4.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u>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u>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 자전거 교통안전 -----

--.

⑤ -----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
비용-----

-----.